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고 용 보 험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악화가 장기화되고 있어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합리화(안 제21조의3제1항제2호)

현행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무급휴직을 90일 이상 시행하여야만 지원금을 지급하여 제도 활용이 어려웠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약」에서 무급휴직 ‘90일 이상 시행’ 요건을 ‘30일 이상 시행’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이에 현행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개선하여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유급휴가훈련 지원요건 완화 (안 제41조제1항제5호 가목, 다목)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에 해당하거나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사업장에 한해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유급휴가훈련 지

원을 위한 최소 유급휴가일수를 5일에서 3일로, 최소 훈련시간을 20시간에서 18시간으로 완화하고, 계속하여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1개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휴가일수를 60일에서 30일로, 최소 훈련시간을 18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완화하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90일”을 “30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5호가목 중 “것”을 “것.”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에 해당하거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 하는 업종 또는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1개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3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8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제41조제1항제5호다목 중 “것”을 “것.”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에 해당하거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 하는 업종 또는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제1항제2호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동조 제4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에 관한 유효기간)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제41조제1항제5호 가호 및 다호의 단서는 2020. 12.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3(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가 있음에도 고용조정을 하는 대신에 실시한 휴업 또는 휴직(이하 “ 휴업등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의3(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①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3개월 이상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대하여 <u>90일</u> 이상 휴직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2. ----- ----- ----- ----- <u>30일</u> ----- ----- ----- ----- ----- ----- -----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합의에 따라 휴직수당 등 금
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 ~ 다. (생략)

② ~ ⑥ (생략)

제41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
발 훈련비용의 지원) ① 법 제2
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을 받은 훈련과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을 말한다.

1. ~ 4. (생략)

5.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
자(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제
외한다)에게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유급
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의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경
우로서 휴가기간 중 「근로기
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이하 “통상임금”이
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

가. ~ 다.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1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
발 훈련비용의 지원)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

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
업능력개발 훈련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
업주나 상시 사용하는 근
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5일 이
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20
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
할 것 <단서 신설>

나. (생략)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사업주가 1년 이상 재
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

가. -----

- 것.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에 해당하거나 「고용
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
정·고시하는 업종 또는 지
역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1개월 범위 내에
서 탄력적으로 3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8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나. (현행과 같음)

다. -----

상으로 계속하여 6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8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단서 신설> 라. (생략) ② ~ ⑤ (생략)	----- ----- ----- - 것.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에 해당하거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 또는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라.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7373